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병인 자격 등 명시〉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1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2. 30.

다. 회 부 일 : 2025. 12.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영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영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 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9조의22(간병인의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노인 또는 환자 등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업무를 하려는 사람에게 간병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간병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23에 따른 간병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간병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무시험 검증하고 간병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병인 자격증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2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간병인의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3(간병인 교육기관의 설치) ① 간병인을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간병인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4(간병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병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신 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7. 제39조의25에 따라 간병인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의25(간병인의 자격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간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39조의2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간병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5. • 6.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39조의22제6항을 위반</u> <u>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u> <u>빌려주거나 빌린 자</u> <u>4의3. 제39조의22제7항을 위반</u> <u>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u> <u>리는 것을 알선한 자</u> 5. • 6. (현행과 같음)
---	--

□ 국내 법률상 간병인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간병이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보조나 신변을 돌보는 행위를 의미함¹⁾²⁾.

□ 간병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필요한 간병인 규모는 약 14만 명인데 비해 실제 활동 중인 간병인은 약 3만 8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³⁾.

나아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확산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1) 박숙완, 「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2021, 4, pp.129-160.

2) 참고로 관련 단체(서울간병인협회)에서는 간병인의 업무를 다음의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음.

1. 환자의 침상 및 병실의 청결유지
2. 환자의 식사 및 대소변 수발, 투약보조
3. 환자의 침상목욕, 머리감기기, 구강청결
4. 의사, 간호사선생님의 지시사항 준수 및 금지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
5. 검사나 외래치료시 환자이동
6. 환자의 재활운동 치료를 도움
7. 환자의 말벗으로 격려와 용기로 안정 도모
8. 환자의 섭취량, 배설량을 기록
9. 환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제 발생시, 간호사실에 즉시 보고함
10. 수술환자등 증상에 따른 간병실시

자료: 서울간병인협회 홈페이지(<https://www.seoulhr.com>, 최종방문: 2026. 3. 5.)

3) 이영재, 『‘간병급여화’ 오히려 돌봄 재난 초래한다...왜?』 의협신문, 2025. 12. 8.

< 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2011~2023) >

(단위: 명, %)

구분	2011	2014	2017	2020	2023
65세 이상 인구	5,515,179명	6,277,126명	7,066,060명	8,151,867명	9,730,411명
만성질환 유병율	88.5%	90.4%	89.5%	84.0%	86.1%
장기요양보험인정자(%)	324,412명 (5.9%)	424,572명 (6.8%)	585,287명 (8.3%)	857,984명 (10.5%)	1,097,913명 (11.3%)

* 자료: 인구상황판(국가데이터처), 「노인실태조사」 및 「장기요양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는 간병서비스, 간병급여, 간병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의료법」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u>간병서비스</u> 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① <u>간병급여</u> 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u>요양병원간병비</u> 로 지급할 수 있다.

- 현재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하여 간접 고용되었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관계로 종사하고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⁴⁾.

□ 이에 개정안은 간병인의 자격, 교육기관의 설치, 결격사유,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개정안은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간병서비스는 의료와 복지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의료법」은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운영 간병서비스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거법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 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법」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의료필요도,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의 통과자	간병인 인건비 지원 * 본인부담률 40~50% 전제	「보건의료기본법」 ⁵⁾
노인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보도참고자료), 2024. 2. 23.

장애인활동 지원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 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자료: 보건복지부

<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한 「의료법」 규정 >

「의료법」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100병상 이상의 병원
2.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 **요양병원**
4. 정신병원
5. 종합병원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 의료기관

□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간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병업무 포켓북’을 발간한 바 있고,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간병인의 자격(결격사유), 간병인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주요 규정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5)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간병”이라 함은 환자에게 일상생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간병인”이라 함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관리자”라 함은 요양병원 개설자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 중에서 간병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간병인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감염병의사환자로서 그 감염병의 종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간병인의 업무) ① 간병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업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
 2. 의료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단순 보조업무
 3.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4. 환자의 주변 환경 정리
 5. 업무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자의 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환자 및 그 보호자가 요구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간병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병인의 책무) ① 간병인은 업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간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간병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의 정당한 간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간병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폭언, 폭행, 학대, 신체 노출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간병인은 환자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간병인은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 및 의료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⑦ 간병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관리자가 지정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⑧ 간병인은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간병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⑨ 간병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⑩ 간병인은 환자에 대한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간병인은 요양병원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간병인의 권리) ① 간병인은 환자, 보호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및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간병인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을 지시받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차별이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간병인은 요양병원 개설자로부터 적절한 간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간병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및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요양병원 개설자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 간병인은 적절한 휴게 공간과 휴게시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는 60대 이상, 외국인, 1년 미만 근속기간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병인 현황을 고려할 때, 수급 상황의 변화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요양병원 간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 분		명	%
성 별	남	6,538	18.7
	여	28,391	81.3
연 령	40대 미만	344	1.0
	40대	905	2.6
	50대	6,133	17.6
	60대	18,671	53.5
	70대 이상	8,868	25.4
국 적	내국인	18,737	53.6
	외국인	16,192	46.4
근속기간	1년 미만	15,537	44.5
	1~3년	13,254	37.9
	3년 이상	6,138	17.6
계		34,929	

* 자료: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병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서비스 수혜자가 되므로, 간병인을 노인 돌봄 관련 직군으로만 제한하여 「노인복지법」에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간병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서비스 수혜자가 되므로, 간병인을 노인 돌봄 관련 직군으로만 제한하여 노인복지법에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함. - 국가공인자격 도입과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 등 기존 국가자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함.
대한요양 병원협회	◦ 간병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의료현장의 현실과 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간병인 자격화는 의료현장의 간병인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앞서 인력 수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간병인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인력이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에서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인력임.

문 의 처

02)6788-5499